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업무내용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는 업무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기술자격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 기술인은 제외한다.

3.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p>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p>	<p>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p> <p>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 압력계 라. 데이터 기록계 마. 연소ガ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사.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 풍속계 차. 디지털 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R.P.M측정기) 하. 초음파두께측정기</p> <p>거. 아들자캘리퍼스 너. 이산화탄소 (CO2) 측정기 더. 일산화탄소 (CO) 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 내시경 카메라 서. 수질분석기</p>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